

대법원 2013. 3. 28 선고 2012다9914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3. 3. 28 선고 2012다9914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9. 7 선고 2012나1764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3. 16 선고 2009가단36221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

담당변호사 경수근, 안지현, 임웅찬, 정은아

피고, 상고인 B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나17645 판결

판결선고 2013. 3. 28.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{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'상고이유서(보충서면)'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}를 본다.

원심은, 피고의 우측 하지 부위에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제2차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왕증이라고 보고,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그 판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, 채증법칙위반, 관련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